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30.

발 의 자 : 이건태 · 박희승 · 박상혁
추미애 · 박지원 · 김준형
한준호 · 박균택 · 문대림
전용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, 지하시설물 정기점검, 지반침하위험도평가,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.2%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, 안전실태 점검,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·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

임(안 제34조제1항 등).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, 안전관리 실태점검,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지하안전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반 침하 예방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)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34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며, 시장·군수 ·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 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<u>보고하여야 한다.</u>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고,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-- ----- -----

③ ~ ⑤ (생 략)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<후단 신설>

<신 설>

-----.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, 안전관리 실태점검,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지하안전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반침하 예방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.